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654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1. 4. 선고 2020가소2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림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6. 7. '함안 D공사' 및 2017. 7. '하동 E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중기사용료는 36,542,000원(= 함안 현장 14,157,000원 + 하동 현장 22,385,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8. 1.경 원고가 위 중기사용료 중 7,1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7,19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함양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1. 19.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위 가압류 청구금액 7,192,000원 및 가압류 비용 460,000원 합계 7,6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중기사용료 29,350,000원 외에 피고에게 2017. 7. 16. 3,420,000원 및 2017. 8. 17. 3,420,000원 합계 6,8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총 43,842,000원(= 29,350,000원 + 6,840,000원 + 7,65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중기사용료 36,542,000원보다 7,300,000원(= 43,842,000원 - 36,542,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16. 3,420,000원 및 2017. 8. 17. 3,420,000원 합계 6,8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18. F에게 9,7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에게 9,79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추가 지급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기사용료를 초과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피고에게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F 사이의 관계를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F는 제1심 법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만으로는 현장경비가 부족하자, 원고의 대표이사 G가 피고로부터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현장경비로 사용하라고 하여 9,790,000원을 돌려받았고, 다른 공사 현장도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6,840,000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7. 8. 18. 곧바로 F의 계좌로 9,79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